질병군 급여 일반원칙(비급여) 4.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가.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행위급여목록표에 고시된 행위

나.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치료재료 다. 요양급여기준 별표 2의 비급여대상 중 제6호의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항목 중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마.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1호 마목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 ·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2)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써 외래진료 및 퇴원약제 등을 포함하되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가) 질병군 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나) 질병군으로 퇴원 후 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다) 질병군으로 퇴원 후 질병군 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재입원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3) 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Q. 질병군 진료기간 중에 환자가 원하여 불임관련 진료를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여부

☞ 고시 제2004-36호 ('04.6.24, '04.7.1. 시행)「불임관련 진료의 요양급여여부 μ Q. 자궁내장치(IUD)를 교체하고 재삽입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방법은?

입하는 경우의 관련 진료비용은 <mark>비급여대상</mark>임. 다만,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가 기존에 유치된 자궁내 장치를

질병군 진료기간 중 일차성 불임과 이차성 불임에 해당되어 불임관련 진료를 시행한 경우는 질병군 급여상대가 치점수에 포함 됨. 다만, 일차성 불임과 이차성 불임에 해당되지 않고 환자가 원하여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는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고 동 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재삽

제거하고 새기구를 삽입하는 경우는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됨

☞ 고시 제2011-50호('11.4.29.)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비급여대상임

Q. 통증자가조절법(PCA)시 비급여 치료재료나 약제 사용시 적용방법은? '각종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은 행위별수가제와 더불어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도 요

양급여비용의 전액(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산정기준은 행위별과 동일함. 다만, 치료재료 및 약제가 비급여인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가격은

Q. 질병군으로 입원진료 중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요실금수술 별도 산정 여부

☞ 고시(2005-101호 2005.12.30)「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L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 함.

산정함(비급여)

환자가 요실금수술을 원하는 경우라도 수술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여부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 고시 제2011-144호('11.11.25.)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Q. 질병군 대상 수술 후 기력저하 등의 이유로 환자가 원하여 투여하는 영양제의 별도 산정 여부

질병군 포괄수가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포함(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비급여목록 제외)되어 있으며,

결정되어야 함. 또한 요실금수술이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 수술 비용과 사용된 치료재료 등은 별도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피로 및 권태에 투여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가능합니다

질병군 진료기간에 투여한 영양제 또한 질병군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수 없음.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비급여)에 근거하여 포괄수가에 발생빈도 만큼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에 따라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의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면내시경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별도로

유착방지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Q. 칼슘제제 등 건강보조식품 별도 산정 여부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은 건강보험 급여 여부의 논의 대상이 아님

Q. 제왕절개 분만시 유착방지제 별도 산정 여부

부담시킬 수 없음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비급여)에 근거하여 포괄수가에 발생빈도 만큼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Q. 질병군 진료기간 중 수면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여부

복지부 고시 제2013-180호('13.11.27) "MRI 세부산정기준" 따라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Q. 질병군(DRG) 입원진료기간 중 MRI 촬영을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여부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Q.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자궁근종)」시 실시 하는 자기공명영상유도비용 별도 산정 여부

Q.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불투명·투명 드레싱재료 별도 산정 여부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자궁근종)」을 실시한 경우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 질병군을 적용하며, 자기공명영상유도비용은 MRI 세부산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13-180호, '13.11.27.) 및 질병군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불투명·투명 드레싱재료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발생빈도 만큼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군 비급여 목록이 아니므로 별도로 산정 할

수 없음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로써 신의료기술등요양급여 결정 신청한

신의료기술인 경우 질병군에서의 적용방법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 · 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 결정신청 항목은 <mark>질병군 포괄수가제</mark> <mark>에서는 급여대상임</mark> 따라서, 산정방법은 행위의 내용 · 성격이 가장 유사한 수술항목을 적용한 후 분류되는 질병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6호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음